

국제심포지엄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

본 자료는 2019년 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B2F)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

I. 개최 취지 5

II.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6

: 규제상의 이슈와 방안

발표자: 「백재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III.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9

: 유럽 보험회사의 솔벤시 II 대응사례

발표자: 「Nardeep Sangha」 (스위스재보험서비스 최고경영책임자)

IV.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12

발표자: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V. 보험사업 혁신을 위한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경험: AIG 그룹의 사례 16

발표자: 「Bill Zhang」 (일본 AIG손해보험 최고분석책임자)

CONTENTS

국제심포지엄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

VI. 토론내용 요약	18
1. 패널토론	18
[세션 1]	18
「Roberto Baron」 (메트라이프 금융그룹 수석부사장)	18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19
「고인철」 (DB손해보험 CRO)	20
「하주식」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과장)	23
[세션 2]	23
「박광춘」 (한국신용정보원 상무)	23
「이준섭」 (보험개발원 부원장)	24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26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	27
2. 발표자 답변	28
「Nardeep Sangha」 (스위스재보험서비스 최고경영책임자)	28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29
「백재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9

I. 개최 취지

- 경제 성장 둔화로 보험산업의 매출 성장률과 자본효율이 낮아지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2002년부터 2008년 사이 연간 10% 수준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으나 최근 매출 성장 폭이 5% 이하로 감소하고 있음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ROE도 경기성장 둔화와 지급여력제도의 강화로 최근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또한 2022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 17) 및 새로운 재무 건전성 제도(K-ICS)는 보험회사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임
 - 보험회사 부채를 시장가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IFRS 17 도입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솔벤시 II와 유사한 K-ICS의 도입도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요구해 보험회사가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도록 할 것임

-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활용한 자본관리와 빅데이터 활용은 보험회사들이 환경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외국 보험회사들은 금융재보험 및 공동재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계약을 이용해 재무건전성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지 못함
 - 따라서 해외 재보험 활용 사례와 국내 제도 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재보험 시장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빅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은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 제시가 필요함
 - 국제경영연구원(IMD)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세계에서 31위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음

II.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규제상의 이슈와 방안

「백재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제도 환경변화와 새로운 형태의 재보험에 대한 필요성

- 최근 다양한 제도변화로 인해 자본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
 - 보험 소비자 보호와 회계상 국제 정합성 추진을 위해 2022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新 지급여력규제(K-ICS) 영향으로 보험회사들의 재무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될 것임
 - 국제회계기준은 보험회사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해 부채 규모가 현재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함
 - 新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더욱 철저히 평가하도록 할 것임
 - 또한 최근 경제성장 정체로 인한 저금리 기조로 부채 규모가 높게 평가됨
 - 보험계약자에게 다년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저금리가 유지될 시 미래에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금의 현재가치(부채의 현가)가 커짐
- 이러한 환경변화로 보험회사들이 재보험을 활용해 자본을 관리할 유인이 커짐
 - Delloitte(2017)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생명·손해 보험회사들 중 80% 이상이 재보험 계약을 하는 이유로 자본관리를 선택했음
 - 손해보험회사들의 경우 재보험 계약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대재해 위험 관리를 꼽았고 자본관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였음
- 자본관리에서 재보험의 주요 기능은 보험회사의 부채를 줄여 지급여력제도가 요구하는 요구자본을 줄이는 것임
 - 따라서 재보험 계약으로 요구자본 조달 비용도 감소함

2. 공동재보험과 금융재보험

■ 비전통적인 재보험 계약으로 공동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이 있음

- 공동재보험(Coinsurance)은 보험회사가 보험 리스크뿐 아니라 예금 및 비용 등을 재보험자와 공유하는 형태의 재보험임
- 금융재보험(Finite Reinsurance)은 전통적인 재보험에 재보험자의 재보험금 지급에 추가적인 조건이 붙는 형태의 재보험임
 - 전통적인 재보험에 추가적인 조건이 붙어 보험 리스크 전가 수준이 적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며 1년 이상의 장기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음
 - 금융재보험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자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재보험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 우리나라 재보험 관련 제도

■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에서 재보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재보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보험위험의 전가가 있을 것
 - 해당 재보험 계약으로 인하여 재보험을 수재한 재보험자에게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
 - 재보험회사가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재보험회사가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 보험 관련 제도가 보험 리스크 이외의 보험영업 부분을 재보험 회사로 출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무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재보험만 사용됨

- 2002년 개정 이전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 단위의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으로 출재하는 것만을 허용했으나 제도개선으로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 제도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이 허용되어 있으나 실무에서 보험회사들은 전통적인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4. 해외 재보험 제도 현황

- 여러 나라가 각각 다양한 재보험 형태를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IAIS는 ICP(Insurance Core Principles) 13에서 재보험을 통한 리스크 전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보험 리스크 전가에 대한 기준이 보험감독자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규정은 보험 리스크 이외의 리스크 및 보험영업의 일부를 원수보험사가 재보험자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함
 - IFRS 4/IFRS 17은 '상당한 수준의 위험전가(Significant Risk Transfer)'를 규정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활용한 리스크 전가를 인정함
 - 미국의 보험감독자협의회(NAIC)는 생명보험 재보험 모델법에서 보험회사가 다양한 리스크¹⁾를 재보험을 이용해 관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SAP·GAAP 등의 회계제도에서 재보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 EU의 솔벤시 II, 일본, 싱가포르 등도 이들과 유사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5. 개선 방안

- 외국의 경우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활용해 지급여력제도의 강화에 대응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재보험 이외의 재보험이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따라서 제도변화에 앞서 공동재보험과 금융재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을 인정하는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함

1) 사망, 해지, 신용, 채투자 등을 말함

III.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유럽 보험회사의 솔벤시 II 대응사례

「Nardeep Sangha」 (스위스재보험서비스 최고경영책임자)

1. 솔벤시 II 도입 배경

- 솔벤시 II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이해 제고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 EU는 2001년부터 솔벤시 II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2016년부터 도입해 활용하고 있음
 - 솔벤시 II는 정비된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활용, 리스크를 고려한 자본금 확보, 다양한 리스크 관리 수단 인정 및 평가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솔벤시 II와 같이 강화된 지급여력제도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동기가 강해졌음
 - 솔벤시 II가 복합적인 리스크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므로 보험회사 리스크 규모가 기존 방법에 비해 크게 평가될 수 있음

2. 다양한 재보험 활용 가능성

- 보험회사들은 전통적인 재보험과 공동재보험을 활용해 보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음
 - 보험회사들은 전통적인 재보험을 활용해 리스크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음
 - 리스크의 변동성이 줄어들면 필요한 자본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순이익이 증대될 수 있음
 - 솔벤시 II가 도입된 이후 보험회사들은 전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동재보험과 같은 다양한 재보험 활용을 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은 보험 포트폴리오 리스크 전가, 리스크 집중 완화, 자본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재보험을 활용하고 있음
 - 최근 들어 재보험을 활용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험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음
 - 재보험은 장수위험, 대규모 해약 위험 등 특정 부문에 집중된 위험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일부 보험회사들은 재보험을 활용해 재무제표상에서 보험부채로 인식되던 부분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음

3. 재보험 계약 사례 소개

- 보험회사는 재보험을 활용해 Negative Reserve를 현금화 할 수 있음
 - 현재 일부 국가들의 보험제도는 Negative Reserve를 자본금으로 인식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 재보험회사가 보험회사에 현금을 지급하고 Negative Reserve 부분의 보험영업 부분을 원수보험사로부터 인수해 보험회사의 Negative Reserve를 자본화하도록 할 수 있음
-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보유 보험 계약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 스위스리는 보험회사의 보유 보험 계약 포트폴리오 분석 및 보험 리스크 인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함
- 스위스리는 장수위험, 대규모 해약 위험 등 특정 부문에 집중된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를 지원함
 - 스위스리는 장수 스왑과 대규모 해약 위험에 대비한 비비례재보험(Stop-loss Reinsurance Contract)을 통해 보험회사들이 집중된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함

4. 제도 및 결론

- 재보험 계약의 유효성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통해 평가될 수 있음
 - 재보험이 지급여력비율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 재보험 계약 시 재보험자의 신용도가 고려되었는가?
 - 재보험 계약이 불필요한 시나리오가 존재하는가?
 - 어떤 경우 재보험금이 지급되고, 지급되는 재보험금이 충분한가?
 - 재보험이 자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금융감독당국은 재보험 계약 평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보험 계약 체결 동기는 무엇인가?
 - 재보험 계약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리스크 전가가 발생하는가?
 - 원수보험사가 재보험 계약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IV.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1. 최근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빅데이터의 필요성

- 빅데이터 활용은 보험회사들이 성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빅데이터는 보험회사들이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집적 데이터 종류 및 규모의 확대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은 보험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임
- 빅데이터 활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능력은 외국에 비해 크게 뒤쳐져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제경영연구소(IMD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능력은 세계에서 31위로, 12위인 중국에도 크게 미치지 못함

2. 국내외 보험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 동 발표는 국내외 보험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빅데이터 생태계 사례, 빅데이터 관련 해외 제도 사례 등을 소개함
- (활용 사례) 국내외 보험회사들은 상품개발, 마케팅, 보유계약 관리, 인수심사, 고객 서비스, 보험사기 적발, 위험 관리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보험회사들은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자동차보험, 휴대용 전자기기를

이용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유병자보험 등을 출시했음

- 또한 다양한 보험회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화된 고객 응대 시스템, 사기 적발 시스템, 온라인 평판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생태계 사례) 해외 보험회사들은 빅데이터 문제 공유 플랫폼과 빅데이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해 빅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함

- 미국의 기업들은 Kaggle과 같은 빅데이터 문제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연구자들과 빅데이터 문제를 공유하고 있음
 - 보험회사와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가진 빅데이터 문제와 데이터를 Kaggle을 통해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한 팀에게 소정의 상금을 제공함
 - Kaggle을 통해 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연구자들은 빅데이터 분석 경험을 얻을 수 있음
 - 이와 같은 생태계를 통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음
- AXA는 세계 각지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연구 기관과 협업하여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현재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음

■ (제도 사례) 싱가포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핀테크 신사업 모델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규제가 완화된 제한적인 공간·시간 내에서 새로운 핀테크 사업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임
-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 변화가 기업의 필요에 부합할 수준으로 빠르지 못하다는 점에 착안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들이 신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3. 빅데이터 활용상의 문제점

- 우리나라 보험회사 빅데이터 실무자들은 데이터 및 분석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각종 내부적인 문제점들을 빅데이터 활용 저해 요인으로 지적함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개인정보'로 분류하도록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기업 간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함
 -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도입된 이후 보험회사들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었음
-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빅데이터 문제 또는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꺼려해 빅데이터 전문가가 양성되기 어려운 생태계 환경이 조성되었음
 - 기업들이 빅데이터 문제를 공유하지 않아 연구자들이 경험을 쌓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해 전문가가 양성되기 어려움
- 또한 보험회사 분석 실무자들은 지나치게 복잡한 내부 보안 절차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실무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빅데이터 분석이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만 사용되는 것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
 - 일부 보험회사들의 경우 지나치게 복잡한 내부 보안 절차로 인해 업무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실무자의 저항 및 이해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국내외 보험회사들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우 활용분야가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개선 방안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 생태계 활성화, 보험회사 내부 관리체계 개선 등을 제안함
 - 보험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강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자체 또는 특별법 도입을 통한 규제 완화가 가능함
 -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빅데이터 관련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최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가까운 미래에 활용이 가능할 것임²⁾
- 보험회사, 정부, 학계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험회사가 빅데이터 문제를 외부 연구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접점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함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

V. 보험사업 혁신을 위한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활용 경험: AIG 그룹의 사례

「Bill Zhang」 (일본 AIG손해보험 최고분석책임자)

1. 일본 AIG의 빅데이터 관련 현황

- 일본 AIG는 빅데이터 거버넌스, 빅데이터 시스템,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도구 등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 일본 AIG는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외국계 보험회사로서 현재 200여 개의 빅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
 - 일본 AIG는 정보와 분석 도구들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와 내부 빅데이터 관리 체계(거버넌스)를 통해 빅데이터 업무를 관리하고 있음
 - 거버넌스는 일관성 있는 용어 정의 및 커뮤니케이션, 분석의 정확성 검증, 철저한 보안 유지, 직원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함

2. 일본 AIG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 일본 AIG는 손해사정 및 고객관리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 일본 AIG는 동일본 대지진 시 침수 지역의 위성사진을 토대로 침수 정도를 파악하고 보험금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들 지역에 보험금을 지급함
 - 일본 AIG는 보험회사의 직원 및 모집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UI/UX(User Interface/User Experience) 집중 연구를 통해 사용자가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운 앱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둠
 - 또한 일본 AIG는 고객 상태별 빅데이터 활용 방법을 고안해 활용하고 있음
 - 고객 상태를 마케팅 ⇒ 청약 ⇒ 계약기간 ⇒ 갱신 ⇒ 보험금 청구 등으로 구분
 - 마케팅: SNS를 활용한 마케팅 대상 설정

- 청약: 최적의 모집인 설정, 고객 맞춤형 상품 제시, 자동 요율 제시
 - 계약기간: 리스크 관리 컨설팅, 리스크 모니터링 등
 - 갱신: 갱신 우선 관리 고객 선정, 최적의 담보 재설정 제시
 - 보험금 청구: 보험사기 적발, 보험금 지급 업무 간소화 등
- 일본 AIG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4% 수준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적중률은 기존 방법(적중률 0.14%)보다 10배 이상 정확한 방법임

3. 보험회사의 빅데이터 감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 보험회사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이슈들이 해소될 필요가 있음

- 특정 집단 요율 차별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통계적 특성이 다른 집단에 대한 요율 차별이 불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 복잡한 요율 산출방법 승인을 위한 제도적 준비 필요
 - 빅데이터를 활용한 요율 산출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승인할 수 있는 역량 및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운영
 - 빅데이터 활용이 많아질수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증가하므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함

VI. 토론내용 요약

1. 패널토론

[세션 1]

「Roberto Baron」 (메트라이프 금융그룹 수석부사장)

■ 생명보험회사 입장에서 재보험에 대해 논하고자 함

- 자본과 리스크, 재보험의 사이클은 보험증권 발행, 리스크 발생, 자본 축적, 재보험, 리스크 완화, 자본 완화를 거쳐 다시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 이때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와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고 리스크를 전가하는 재무상의 거래임
- 재보험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보험회사에 보험료/자산을 지불하고 보험증권 판매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리스크(바이오메트릭, 자산/시장, 행동)를 전가하고 비용과 보험금을 청구하게 됨

■ 재보험과 관련된 주요 질문은 아래와 같음

- 재보험과 관련된 규제 감독 또는 허가는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가?
- 준비금/리스크 기반의 자본 크레딧 제도는 적절한가?
- 재보험회사의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재보험 수재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 규제 측면에서의 주요 관점은 아래와 같음

- 국제보험감독자협회에 따르면 감독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재보험 계약으로 인한 리스크 전가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증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미국 NAIC는 재보험 계약은 반드시 리스크 전가를 수반하여야 하고, 계약이 리스크 전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 시 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함

「김헌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 재무 규제, 회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이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들이 현재까지는 제한적임
 - 보험회사들이 가용자본을 만들기 위해 썼던 방법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재보험 활용도는 떨어짐
- 제도 배경을 살펴보면 간단한 비율 형식의 지급여력제도가 1999년에 국내에 도입되었고 RBC 계산식 형태는 2009년에 도입됨
 - RBC 도입 전에는 보험회사들에게 책임준비금 정도만 요구되었는데 지급여력비율제도 도입 이후인 2000년대 중반에 보험회사들이 압박을 받으면서 재보험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금융감독당국이 재보험 계약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계기가 됨
 - 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역외거래가 허용되어 있고,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재보험을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임
 - 재보험 거래의 경우 감독당국을 포함하여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솔벤시 II의 취지를 생각해볼 때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된 보험 위험을 일반 위험으로 확대 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2018. 6)에 해당 제도 정비와 관련된 핵심내용이 담겨 있음
 - RBC 금리리스크 계산식에 Coinsurance 형식의 금융재보험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솔벤시 II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유럽시장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많이 다르므로 일본과 대만의 규정과 감독당국의 규제 사례를 확인해서 RBC 계산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RBC 계산식에 생명보험 재보험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세법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함

- 백재호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제도 개선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금융재보험의 경우 금리리스크가 전가되는 것이므로 언더라이팅 리스크 전가보다는 광범위함
 -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수정 Coinsurance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절하다고 생각함
- 금융재보험은 금리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므로 감독당국이 역량을 갖추는 등 상당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고인철」 (DB손해보험 CRO)

- 생명·장기손해보험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동재보험 인정이 필요하다는 백재호 변호사의 제언에 동의함
- 보험업계는 2022년에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IFRS 17, IFRS 9, K-ICS 등 자산 및 부채, 자본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일대 혁신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 新 제도 대응을 위해 해당 시스템 구축작업과 더불어 경제적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하는 新 제도에 걸맞은 리스크 및 자본관리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K-ICS는 자산·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99.5% 신뢰수준 상향, 측정 대상 리스크 확대를 핵심으로 함
 - K-ICS 도입 시 생명·장기손해보험 관련 보험 및 금리 요구자본의 대폭 증가로 지급역력비율이 현행 RBC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격완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함
- 新 제도 대응을 위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수단에 대해 살펴보면 보험회사가 가용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유상증자,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조달 등이 있음

- 유상증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후순위채권/신종자본증권은 단기적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채권발행 비용 상승 시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됨
 - 장기유량 채권을 활용하여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ALM)을 할 경우 금리리스크의 요구자본이 감소하나 아래와 같은 한계가 존재함
 - 초장기 부채를 매칭할 수 있는 채권이 부족한 국내 채권시장,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률 저조, 해외채권 매입 증대 시 환리스크 노출 및 환헤지비용이 증대됨
 - 금리리스크 헤지를 위한 이자율스왑, 선도채권 매입 등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방안은 국내 금리 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제한적임
 - 초장기 부채 보험상품 구성변화: 변액보험의 연만기 확대/보장기간 축소, 보증 축소 등 요구자본이 덜 부과되는 상품 포트폴리오로의 전환
 - 현재 외형경쟁 중심의 시장구조, 만기 및 보장의 축소가 수반되는 상품구조의 변경은 계약자에 대한 보장 축소로 이어지고 신계약에만 한정된다는 문제가 있음
- **재보험 활용 측면에서 전통적 재보험과 대안적 재보험을 활용한 리스크 경감 기법으로 요구자본 감축을 통한 가용자본 확충의 효과 극대화가 가능함**
- 솔벤시 II 하에서 유럽재보험자들이 자본관리 수단으로 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현재 국내 재보험 활용 현황은 전통적 재보험 기능(보험리스크 전가)에 머물러 있음**
- 국내에서 재보험은 전통적 형태의 비례 및 비비례재보험으로서 주로 보험리스크 한도관리, 거대 리스크 및 대재해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적극적 자본관리 수단으로서 대안적 재보험 활용은 제한적임
 - 대안적 재보험의 활용 저조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보수적 규제(금융재보험의 보고제도-사실상 허가제), 지급여력비율 개선 목적의 재보험거래에 대한 불신, 회계처리 등 불확실성, 현행 RBC제도하 보험회사들의 적극적 활용 의지와 필요성 부족을 꼽을 수 있음

■ **자본관리 수단으로서 재보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재보험을 통한 재무비율(ROE 등) 개선과 지급여력비율 개선은 자본조달 제약환경 하에서 보험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행 용이한 핵심 수단 중의 하나임
- 최소한 국제적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재보험거래 특히, 국제기준인 IFRS 17, 솔벤시 II, ICS 등에서 인정되는 충분한 보험 리스크의 전가가 확인되는 공동 재보험에 대해서는 허용이 필요함
- 나아가 다른 대안적 재보험에 대해서도, 최소한 보험 국제 감독 기준인 보험핵심준칙(ICP)상 Finite Reinsurance의 재보험거래 인정 및 요구자본 계산 반영 기준인, ‘충분한 보험 리스크의 전가’와 ‘적절한 회계기준’ 등을 충족하는 재보험거래에 대해서는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동재보험 도입 시 고려 사항으로서 리스크 전가 대상 보험계약의 가치 평가를 통한 적정 재보험 가격 산출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임**

- 향후 도입될 IFRS 17, K-ICS의 부채시가평가 등과의 조화, 그 외에 공동재보험의 출재수수료, 평가차액 등의 회계처리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Nardeep Sangha 발표 중 EU에서 2016년부터 시행된 솔벤시 II의 핵심 동인³⁾으로 인하여 자본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를 위해 리스크 경감 기법(Risk Mitigation Tools)의 사용이 증대된다는 점은 K-ICS 도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솔벤시 II 하에서 재보험을 활용한 자본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3가지 범주와 사례는 공동재보험 및 금융재보험 허용과 관련해 국내에서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재보험의 활용을 통해 단순히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 원수보험사의 리스크 인수 능력을 개선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를 위한 혁신적 상품제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3) 자산의 시장가치 평가와 無 리스크 수익률 기반 할인율로 인한 역마진 발생, 보장성 및 변액보험 상품을 통한 지급여력비율 개선, 시나리오방식의 요구자본 산출 등을 말함

- 다만, 국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재보험 활용 시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하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최종 실행에 대한 결정은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비용과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하주식」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과장)

- 금융감독당국에서는 IFRS 17과 新 지급여력제도인 K-ICS의 연착륙을 위해 업계와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2018. 6)에서 발표하였듯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재보험뿐만 아니라 파생상품과 같이 다양한 옵션을 고민하고 있음
 - 이미 해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조사하고 국내 제도 도입 연착륙에 필요한 방안을 준비 중임
-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제도 도입 후 보험회사의 자율에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관한 것임
 - 국내 도입 시 해외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인센티브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임
 - 재보험의 남용, 회계제도상 악용, 소비자 보호 문제 등 이슈와 관련하여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회계처리 기준과 회계공시에 대한 제도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Mr. Baron과 Mr. Sangha가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언급한 부분을 포함하여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음

[세션 2]

「박광춘」 (한국신용정보원 상무)

- 최창희 박사와 Bill Zhang CDAO의 사례발표를 잘 들었고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하는 기관으로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음

■ 발표에서 언급되었듯이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규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임

- 최근 개인정보보호보다 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다행이지만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으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임
-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종 데이터 결합과 활용을 통해 신상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그동안 데이터 결합은 법적근거가 부족하고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미진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원활해 질 것으로 생각함
-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인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맞춤형 상품분석과 자문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보험회사에게도 새로운 환경이 도래할 것임
- 빅데이터 원격분석 서비스는 여신과 채무정보 중심의 일반 신용정보 등을 총 망라하여 원격으로 분석하는 플랫폼으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학계와 스타트업에 개방할 예정임

■ 보험 신용정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필요함

- 빅데이터 분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보험정보의 완전성을 제고하여야 함
 - 신용정보원에 집중되지 않은 2006년 6월 이전 정보의 집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보험업무를 취급하는 공제회의 보험정보 집적이 필요함
- 보험회사와 외부 기관 간의 정보 결합을 지원하여야 함
 - 통신사, 핀테크 기업 등과의 데이터 협력으로 보다 유용한 보험 빅데이터를 생산하여야 함
 - 보험업권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보험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함

「이준섭」 (보험개발원 부원장)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로, 이 세 개의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세 개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임

-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은 이미 개발된 것을 쉽게 적용할 수 있지만, 빅데이터는 스스로 투자해서 집적해야만 함
 - IBM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우리나라 병원에서 적용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은 것은 서양인과 우리나라 환자와의 차이를 간과했기 때문임
 -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의 90% 이상의 자료들이 집적되지 않고 버려지는 실정임
-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에서는 볼 수 없는 리스크 보장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핀테크로 정의하기보다는 별도로 인슈테크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함

■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하고자 함

- 첫 번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유병자의 건강상태의 예측모형 개발임
 - 재작년 서울의대와 공동으로 당뇨병환자의 합병증 예측모형을 개발한 데 이어 작년에는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의 건강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심장질환자의 예측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두 번째는 건강나이 산출임
 - 현재는 보험가입 또는 보험료 산출 시 출생나이만 고려하고 있지만 관리 여부에 따라 같은 나이라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나이에 추가적으로 혈압, BMI,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결합하여 건강나이를 산출하여 보험료 산정 시 할인할증 요소로 활용함
- 세 번째는 자동차사고 사진을 통한 수리비 자동견적 시스템 개발임
 - 매년 집적되고 있는 1억 8천만 건의 자동차사고 사진과 수리비 내역을 기반으로 하여 인공지능이 사고 부위, 사고 정도에 따른 수리비 견적을 산출하는 것으로 81%의 정확도를 보임
 - 차대번호와 부품정보의 활용 등 개인정보보호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경미사고 외 사고에서도 보다 정확한 수리비 산출이 가능할 것임

- 어려운 규제환경이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등의 데이터를 축적하여 해외에 뒤처지지 않는 인슈테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함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 두 분의 발표를 통해 많이 공부하였으며, 발표에서 빠진 부분을 언급하고자 함
- 빅데이터와 인슈테크 활용에서 수익과 비용, 그리고 보험수요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야 함
 - 4차 산업혁명 중 보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분야는 빅데이터가 20%, 다음으로 UBI가 13%, 사물인터넷(IoT)이 12%로 빅데이터가 관건임
 - 보험은 과거부터 다른 금융권에 비해 통계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빅데이터 활용도가 높을 것임
- 일본 보험 산업에서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이이치생명(다이이치생명)은 빅데이터 컨설팅 사업자인 히타치제작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8대 생활습관질환에 대한 입원리스크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인 “Risk Simulator for Insurance”를 개발하여 2018년 10월 3일부터 판매를 개시함
-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비용/편익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겠음
 - 비용 측면에서는 양질의 데이터 수집 비용, 데이터 축적 시간, 데이터의 저장 및 처리 비용(스토리지 장비, 하둡(Hadoop)), 데이터 전문가 인건비, 규제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함
 - 2000년대 중반 일본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큰 화제가 되었으며, 2008년에는 일본 최초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회사인 Lifenet이 설립됨
 - 당시 Lifenet이 공개한 보험료 원가는 4만 엔*으로 대형사 8만 엔**의 절반 수준임
 - * 순보험료 약 3만 엔, 부가보험료 약 1만 엔
 - ** 순보험료 약 3만 엔, 부가보험료 약 5만 엔
 - 이로 인해 보유계약건수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지만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임
 - 중국 중안보험(2013년 11월 설립)은 핀테크 세계 1등 보험회사이며 가입자가 3억 명(2018년 기준)에 달하나 실적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2017년 1분기 3,100만 달러 순손실, 2018년 상반기 순손실 규모는 2017년 상반기 보다 130% 증가함

- 이러한 회사의 적자 원인으로는 설립초기보다 잠재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모형이 실제 수요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보험회사가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빅’한 데이터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빅데이터의 분석은 기술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사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함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

- 국제적으로 보험산업의 큰 흐름은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문(ICS: Insurance Capital Standard) 정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슈테크 변화와 관련한 산업 혁신 지원과 소비자 보호, 사이버 리스크, 포용보험 등 4가지임
- 2015년 영국의 딜로이트사가 손해보험 가입자 3,000명을 대상으로 9가지 주제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표함
 - 텔레메틱스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인한 보험료 절감
 -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기회요인
 - 모바일 청구의 활성화
 - 가격비교 웹사이트 활성화로 인한 신생 보험회사 진입 용이
 - 영국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68%가 가격비교 사이트 이용
 - 사적인 단체보험인 P2P보험 도입이 기존 보험회사에 위협요인이 될 것
 -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일한 리스크를 가진 자를 모집하여 단체로 보험회사와 협상하여 저렴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중개채널의 활성화
 - 사이버 보험이 보험회사에 기회요인이 될 것

-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의 발전으로 1:1 소유구조에 기반한 보험이 도전받을 것
 -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장급부 중심 비교 사이트 등장
 - 위와 같은 시사점이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으로 기대됨
-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크게 뒤쳐지지는 않은 상황임
- 홍콩이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 중임
 - 대만의 경우 재작년에 핀테크 베이스 출범으로 80여 개의 스타트업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함
 - 두바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라질 등의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도 규제 도입에 크게 뒤쳐지지는 않음
- 국회와 정부에서 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금년 4월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한 규제 샌드박스제도가 시행되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감독당국에서는 건강증진형 상품이나 운전습관을 고려한 자동차보험 상품과 같은 혁신적인 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
- 감독상의 이슈로는 사이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P2P보험의 보험업법상 보험모집 해당 여부 검토, 기술 도입으로 인한 업계 대량 실직에 대비한 재교육, 재투자 활성화 등이 있음

2. 발표자 답변

「Nardeep Sangha」 (스위스재보험서비스 최고경영책임자)

- 최창희 연구위원께서 발표 중에 Monetise Negative Reserves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경우에 원수보험사로부터 재보험회사로의 상당한 리스크 전가(Significant Risk Transfer)가 있는 것인지 궁금함. 실제로 리스크

전가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토론자 Roberto Baron 수석부사장의 토론 중에 나온 질문에 대해 덧붙이자면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므로 재보험을 자본관리의 방안으로 활용할 때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재보험을 유연하게 운영하면 유용한 도구가 되고, 보험 상품 개선 및 보험료 책정에 도움이 됨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포트폴리오 수익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듯이 경험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원수보험사가 재보험 계약을 통해 리스크를 전가한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명백함

「백재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토론자 김현수 교수께서 말씀하신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2항 1조에 규정된 '보험위험'이 보험리스크만 전가되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보험리스크와 함께 다른 리스크가 함께 전가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보수적으로는 보험 리스크만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공동재보험을 허용하는 방법이 있고, 일본의 경우 모든 리스크를 전가하는 공동재보험에 대한 규정을 운영함
 -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리스크의 범위 및 전통적 재보험이 아닌 다른 재보험의 규제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업계가 협의를 해야 함
 - 우리나라는 재보험회사가 외국계 보험회사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지급여력 계산 시 카운터파티 신용 리스크 반영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국제심포지엄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

발행일 | 2019년 2월

발행인 | 한기정

발행처 | 보험연구원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연락처 | 02-3775-9000

인쇄처 | 경성문화사 / 02-786-2999

Copyright@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